

수원지방법원 2024. 4. 11 선고 2023가단54580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한국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3. 21.

판 결 선 고 2024. 4. 11.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6. 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1. 6. 3. 접수 제11878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21. 6. 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박성남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화성시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지상 17층 공동주택(아파트)

1층 481.9363㎡

2 내지 10층 각 452.3105㎡

11 내지 17층 각 228.065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5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4.804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화성시

대 39921㎡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39921분의 60,3891

